



문서번호 : 14-12-미군문제-01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하주희 위원장,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전송일자 : 2014년 12월 3일(수)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6매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1.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8회째 이어진 교류회를 통해 주한, 주일 미군문제 현안과 동북아 평화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및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2. 특히 지난 11월 26일,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에서는 최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신청 중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징계 개시 신청에 대해 침부와 같이 연대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위 성명에서 ‘한국검찰이 특정한 변호사의 변호활동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징계청구한 것은 변호사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또한 '변호사 자치의 보장은 변호사가 국가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 원본

붙임2. 성명서 한글 번역본

2014. 1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붙임1)

民弁所屬弁護士への懲戒請求に對する抗議聲明

2014年11月26日

自由法曹団 沖縄支部
支 部 長 新垣 勉

韓国検察庁は、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の会（民弁）に所属するチャン・キョンウク弁護士、キム・インスク弁護士について、大韓弁護士協会（大韓弁協）に懲戒請求を行った。

懲戒理由は、チャン弁護士が、刑事被告人と共に無罪を争ったことが、「虚偽供述の教唆」に当たり、キム弁護士が、刑事被告人に対し黙秘権行使を促したことが、「黙秘権行使の強要」に当たるため、両弁護士の活動が「弁護士の品位を害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

しかし、韓国検察庁のこのような行為は、被告人の諸権利、及び弁護人による弁護権を侵害し、弁護士自治を脅かす、極めて許しがたい暴挙である。

まず、国際人権規約B規約は、何人に対しても弁護人による弁護を受ける権利（同規約14条3項b、d）、及び黙秘権（同g）を保障している。

また、韓国憲法も、同様に、弁護人による弁護を受ける権利（韓国憲法12条4、5項）、及び黙秘権（同2項）を保障している。

そして、被告人において、これらの権利を十分に行使できるよう活動することは、弁護人の重要な役割のひとつである。

それゆえ、今回の韓国検察庁による懲戒請求は、被告人の諸権利、及び弁護人の弁護権を明らかに侵害している。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次に、弁護士自治の保障は、弁護士が国家権力に縛られず、独立かつ自由に活動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な要素である。したがって、弁護士自治を脅かすことは、弁護士の存在意義そのものの否定にもつながるものである。

いうまでもなく、日本でも、弁護士自治が尊重されており、特定の弁護士に対する懲戒事由該当の有無は、地方弁護士会、そして、日本弁護士連合会（日弁連）が判断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なお、日弁連の判断については、東京高等裁判所で争う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な、弁護士自治の趣旨、国際標準に照らせば、今回、韓国検察庁が、特定の弁護士の弁護活動をもって、弁護士会に懲戒請求をしたことは、韓国検察庁が弁護士の活動に不当に介入し、弁護士自治を脅かす、極めて異例な事態であると評価せざるを得ない。

自由法曹団沖縄支部は、隣国で活動する弁護士として、また、共に民主社会を目指して連帯する友人として、韓国検察庁の暴挙に抗議し、大韓弁協の理性ある対応を求める次第である。

以 上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붙임2)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성명

2014년 11월 26일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지부장 아라카키 쓰토무

한국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소속 하는 장경욱변호사, 김인숙변호사에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회(대한변협)에 징계청구를 하였다.

징계이유는 장변호사가 형사피고인과 함께 무죄를 다투는 것이 <허위진술의 중용>에 해당하고, 김변호사가 형사피고인에 대해 묵비권행사를 조언한 것을 <묵비권의 강요>에 해당하므로 양변호사의 활동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검찰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제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용서치 못하는 폭거이다.

먼저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모든 사람에 대해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동규약14조3항 b, d)와 묵비권(동 g)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헌법 또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한국헌법 12조 4, 5항) 묵비권(진술거부권, 동 2항) 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권리를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은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검찰의 징계청구가 피고인의 제 권리,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변호사 자치의 보장은 변호사가 국가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변호사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도 이어진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일본에서도 변호사 자치는 존중되어 있으며, 특정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 해당유무는 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변연)이 판단을 한다(일본변연의 판단에 대해서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다룰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 자치의 취지, 국제표준에 따르면 한국검찰이 특정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징계청구한 것은 한국검찰이 변호사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변호사자치를 위협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유법조단오키나와 지부는 이웃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또한 함께 민주사회를 지향하여 연대하는 동지로서 한국검찰의 폭거에 항의하고, 대한변협의 이성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이상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